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(위생 교육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**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(3시간)**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(과태료)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의 **개정·시행('19.6.12)**에 따라 **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(3시간)을 받지 아니할 경우, 과태료(30만원)**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(위생교육 시간 등)제3항에 따라 **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**가 **해당 연도에 위생교육을 받은** 경우에는 **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**에 대해서 **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**됩니다.

영업자 위생교육은 **한국식품산업협회,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한국식품안전협회**에서 실시하고 있으며, **한 곳을 선택**하여 **교육을 수료**하시면 됩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 기관	
한국식품산업협회(http://www.kfia21.or.kr)	(문의) ☎ 1577-3869(02-3470-8158)
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(http://edu.khsa.or.kr)	(문의) ☎ 1661-2371(031-628-2300)
한국식품안전협회(http://www.safetyfood.or.kr)	(문의) ☎ 02-2051-7006

【공익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 안내】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
▶ **부조리 신고 :** 식약처 홈페이지 "국민소통> 국민신문고> 공직자 부조리 신고" 코너

▶ **공익 신고 :** 식약처 홈페이지 "국민소통> 신고센터> 부패·공익신고 상담" 코너